

KiC

ISSUE PAPER

제56호(2018-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요약 · 3

II. 정책방안 · 4

III. 내용 · 6

1. 소년강력범죄 대응의 필요성 · 6
2.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대응 · 8
3. 소년강력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 · 9
4. 소년강력범죄 대응체계 개선방안 · 10

I. 요약

1 소년강력범죄 대응의 필요성

- 2017년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 국민적 충격을 던져준 강력한 소년 범죄사건이 연이어 발생
- 최근 10년 간 전체소년범죄는 감소하지만, 소년강력범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2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대응

- 검찰
 - 소년범죄의 기소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부 송치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법원
 - 소년보호사건의 불처분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
 -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가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남
 - 소년형사사건은 정기형과 집행유예의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부정기형은 증가

3 소년강력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

- 초기비행에 대한 개입 부족
- 초기비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의 한계
-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

II. 정책방안 ● ● ●

1 소년법 기본이념과 연령기준 인하의 제고

■ 강력처벌이 소년들의 재범과 사법판단에 미치는 영향 엄밀히 검토

- 영국은 형사책임연령이 10세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은 소년형사처벌을 14세로 낮추었으나 소년범죄가 감소했다고 평가하지 않음
- 국내에서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외국과 비교해서 형사처벌 연령이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음

■ 해외 각국의 반엄벌주의 경향

- 일부에서 소년강력사건에 대한 엄벌화가 제기되고 있으나, 대체로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구금에는 신중을 기하자는 분위기
- 독일에서는 장기간 시설 내 구금보다 사회 내 처우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 발표
- 미국 뉴욕주는 소년법과 성인법의 동일 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의지 표명
- 노르웨이는 정치권과 언론이 나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가해자를 사회로 복귀 시키고자 공동체 책임의식을 강조

2 현행 소년사법체계의 제도적 보완

■ 조건부 양형제도의 도입

- 양형선고단계에서 일정기간 교육이나 기타조건을 이수하도록 조건부 집행유예 부과하는 방안

■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을 병행할 수 있는 청년층 신설

- 모든 소년범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폐단 최소화

■ 특정 강력범죄의 제한규정 신설

- 특정강력범죄의 죄종을 축하고 적용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고려

■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신속화

- 소년범죄자가 사법절차에 진입 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재범가능성 차단

■ 보호처분의 다변화

- 부모의 책임성 강화,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서비스 확대, 전문적인 의료치료 제공, 소년원 맞춤형 처우를 위한 보호처분 개선

Ⅲ. 내용 ● ● ●

1. 소년강력범죄 대응의 필요성

가. 소년강력범죄 사건의 연이은 발생과 충격

1) 2017년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 사건 당시 16세 김양과 18세 박양은 사람의 신체 일부를 갖고 싶어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같이 약한 사람을 목표로 살인을 계획함
- 김양은 피해자인 7세 여아를 유인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훼손함
- 박양은 김양이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 중 휴대전화로 지시를 내리고 김양을 만나 신체 일부를 건네받음

2) 2017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 사건 당시 15세~16세이던 4명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장지대에 피해자를 끌고 가서 주위에 있던 철골자재, 소주병, 벽돌, 쇠파이프, 의자로 피해자를 1시간 40분가량 폭행함
- 피해자의 입안과 뒷머리의 피부가 찢어져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고,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무릎을 꿇려 사진을 찍은 뒤 페이스북에 올림
- 이번 사건은 이전에 발생한 1차 폭행사건의 보복성 폭행사건으로 주변 2명은 '피 냄새가 좋다, 더 때리자', '남자를 부를 테니 성관계를 하면 풀어주겠다', '그냥 기억도 못 하게 더 때리자',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그냥 더 때리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짐

나. 소년강력범죄 비율의 증가

- 최근 10년간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 비율은 2008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반면 강력범죄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2007년 2.2%→2016년 4.4%)를 보임
-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 비율이 3.8%에 불과한 반면, 전체 강력범죄자 33,529명 중 소년강력범죄자가 3,343명으로 약 1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년강력범죄자 대책 마련이 절실함

2.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대응

가. 소년범죄사건의 처리 현황

- 최근 5년 동안 검찰의 소년범죄 기소율은 증가(2012년 7.7%→2016년 10.1%)한 반면에 불기소율은 감소(2012년 55.1%→2016년 53.1%)
- 소년부송치 비율은 2011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2011년 36.8%→2016년 33.9%)

나.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현황

- 최근 5년간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처분의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에(2012년 71.2%→2016년 71.0%), 불처분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2012년 4.5%→2016년 8.0%)
- 일부 소년보호사건은 타법원으로 송치되거나, 형사처분을 위해 검사에게 다시 송치됨으로써 소년사건 처리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다. 소년형사사건의 재판결과

-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19세 미만자의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현황을 살펴보면,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징기형도 매우 낮은 비율로 선고됨
- 소년형사사건 처리에서 징기형과 집행유예의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소년부 송치와 부정기형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3. 소년강력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

가. 초기비행에 대한 개입 부족

- 소년사법처리 초기단계 개입으로 불처분이 대부분이고,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의 개입은 몇 시간 동안의 교육이수를 통한 훈방이나 기소유예가 대부분을 차지함
- 비행초기단계 교육기관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유일하나 대부분 단기교육(8시간~4.5일) 위주이고, 학교 및 가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단발성 교육에 그치는 실정

나. 초기비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의 한계

- 초기비행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은 비행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소년의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 기존 보호관찰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와 일반대상자에 대한 구별기준 없이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적으로 대상자 134명을 감독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중적인 면담과 지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다.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

- 관련기관 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점이 드러남
(예. 부산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는 보호관찰대상자였으나 경찰에 정보가 공유되지 못함)
- 소년강력법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행력의 제거 뿐만 아니라 주거나 학업, 취업, 의료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지원이 병행되어야하나 비행력 제거에만 초점을 맞출 뿐 지원 대책은 부족

4. 소년강력범죄 대응체계 개선방안

가. 소년사법에 대한 인식 개선

1) 해외 각국의 반엄벌주의 경향

- 소년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엄벌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대체로 소년범죄자 교도소 구금에 대해 신중을 기하자는 분위기가 각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
- 독일에서는 장기간 시설 내 구금보다 사회 내 처우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 소년법에 대한 강력처벌로 유명한 미국 뉴욕주에서는 소년법을 성인법과 동일시하는 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노력을 보이고 있음

2) 언론의 선정주의 보도 지양

- 1990년대 초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국은 정치권과 언론이 앞다투어 엄벌화 주장을 쏟아내는 것과 달리, 노르웨이에서는 정치권이 나서 언론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자제를 요구하고, 법률에 따라 가해자의 이름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익명으로 보도함
- 현재와 같이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 정보가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국민적 공분 속에서 범죄자를 격리시키자는 여론분위기는 범죄발생의 원인과 재범예방을 위한 냉철한 분석을 방해할 수 있고, 범죄자의 반사회성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3) 소년범죄의 사회적 책임의식 공유

- 노르웨이 사례를 통해 볼 때, 소년강력범죄자를 엄벌주의로 일관하기보다는 극단적인 소년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자성과 공동체 윤리 및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나. 소년사법의 연령기준 인하에 대한 검토

1) 연령기준 판단요소

- 소년강력법에 대해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소년사법이 일반예방에 무게를 둘 것인지 특별예방에 무게를 둘 것인지와 결부되어 있음
- 소년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형사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음
- 도덕성 행동발달이론은 소년의 도덕적 행동이 연령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연구결과에서도 소년 행동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현실적으로 저연령 소년에게 성숙한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2)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 일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현재의 소년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성숙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소년범죄자의 범행계획이나 범해에 따른 처벌수준의 예측은 정신적 성숙도와는 거리가 멀고, 신체적 성숙으로 인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심신발육과정에서 소년의 특수한 정신상태와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형사정책적 주장을 고려한다면, 14세라는 연령기준이 반드시 높다고 볼 수는 없음

3) 소년법 기본이념과 연령인하의 제고

- 소년사법의 연령기준 인하를 통한 강력한 처벌요구가 있으나, 강력처벌이 소년사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형사책임연령이 10세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고, 일본의 경우도 2000년 소년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고, 2007년에 소년원 송치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었으나 소년범죄가 줄었다고 평가하지는 않고 있음
- 국내 범죄통계에서도 최근 소년범죄가 특별히 저연령화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형사처벌 연령이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임
- 연령인하로 소년범죄가 감소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분노와 불안, 이를 부추기는 언론에 이끌려 무조건 연령인하부터 도입하는 입법적 태도는 자제될 필요가 있음

다. 현행 소년사법체계의 제도적 보완

1) 조건부 양형제도의 도입

- 현재의 소년사법에서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선고되면 소년의 개선가능성 및 변화여부에 따라 처우를 달리할 근거가 없음
- 독일처럼 소년법의 처우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진행과정에서 대상소년의 변화, 처우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처우를 결정하는 방식은 소년범죄자의 개선가능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처우라고 할 수 있음
- 양형 선고단계에서 일정기간 교육이나 기타 조건을 이수할 것을 예상하여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을 병행할 수 있는 '청년' 연령층 신설

- 독일은 행위 시 기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를 '소년',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를 '청년'으로 구분하고, 만일 청년이 저지른 사건을 소년이 저지른 사건과 동일시 할 수 있을 경우 소년범죄자에 대해 실제·절차 규정이 준용되고 있음
- 모든 소년법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낙인 문제와 저연령 소년법의 시설내 처우로 인한 폐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과 같이 청년 연령군을 신설하여 이 연령군에 속한 자들에 대해 형사처벌여부를 고려하는 방안 논의

3) 특정 강력범죄의 제한규정 신설

- 미국의 경우 관할 포기나 배제 사유로 총기휴대범죄, 마약범죄 등의 유형이 분류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고의의 살인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처우하고 있음
- 소년강력범을 성인범죄에 준해 현행 특강법안에서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① 특정강력범죄의 죄중을 축소하고, ② 적용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예,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한의 범위 하에서 법정형 상향조정)

4)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신속화

- 소년사건절차가 진행되면 경찰에서 법원단계로 넘어오는 동안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소년범은 다시금 재비행 상황에 놓이게 됨

- 소년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마련을 통해 초기 사법절차 진입 시 즉각적인 개입과 선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년사법시스템의 체질 개선 필요(예. 미국의 관할포기(waiver)제도나 이송절차 개선)

5) 보호처분의 다변화

- 보호처분의 내실화와 제도적 보완은 소년법 적용연령 인하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음
- 보호자 감호위탁(1호)방식을 개선하여 감호위탁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성을 보다 강조
- 보호관찰(4,5호)이 집중적인 관리감독과 필요한 원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확대
- 아동복지시설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6호, 7호) 등 관련시설 위탁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전문적인 의료치료와 보호를 받도록 개편
- 소년원(8,9,10호) 수용기간을 1개월, 6개월, 2년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대상소년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라. 소년범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범정부협업체 운영

1) 초기 개입을 통한 비행예방

- 소년강력범 대부분은 경찰단계에 들어오기 전에 다수의 비행에 노출된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단계에서 초기 비행 발견 시 즉각적인 개입과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 경찰단계에서 훈방, 검찰단계에서는 기소유예, 법원단계에서는 보호자감호위탁을 통해 별다른 개입 없이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처분이 많으므로 각 처분별 효과성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로 개입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상호연계적인 선도교육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2)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소년강력범 대부분이 가족 방임이나 학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과 프로그램 강화
- 현재 소년원에서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족캠프를 활성화하고 보호관찰단계에서 가족관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3) 범정부적 소년범죄예방협의체 신설

-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단절된 대책으로는 소년강력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그러므로 경찰-검찰-법원-보호관찰소-지역사회 관련기관 간 연계와 효율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범정부 단위 협의체 신설이 필요함
- 아울러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의 형사사법망(KICS)을 통일화하고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이 필요함
- 법무부, 경찰, 여성가족부, 교육부 기관 간 정보를 요청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함

* 본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